

1. 개정이유

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(제11조)

-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

나.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주체 정비(제14조제4항)

-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(대행기관 포함)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)”을 “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공공하수도관리청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공하수도관리청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), 공공하수도관리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<u>공공하수도관리청</u> 외의 자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)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<u>공공하수도관리청</u> 외의 자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르고,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.	제11조(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/u> 및 <u>공공하수도관리청</u> 외의 자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) -- --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/u> 및 <u>공공하수도관리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14조(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) ① ~ ③ (생략) ④ <u>공공하수도관리청</u> 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(原水)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	제14조(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/u> 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), <u>공공하수도관리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